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u>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u> 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19. 5. 2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 5.13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매출)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별도의 모집(매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 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가. 요약 재무정보
 - 나. 대차대조표
 - 다. 손익계산서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9.05.02)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펀드 코드: 67946)

투자 위험 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관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중국등(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주식]으로 환했지형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080-377-4777, 콜센터:080-377-4777) [위탁운용사 :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업무위탁범위 : 운용업무/운용지시업무/단순매매주문업무 등]		
모집[판매] 기간	계속하여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을 두지 않음
효력발생일	2019. 5.13	종속 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C1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1억미만 : 1.2% 이내, 1억이상-5억미만 : 1.0% 이내, 5억이상-50억미만 : 0.5% 이내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보수 [연, %]	판매	0.60%	1.50%
	운용 등	운용보수 : 0.90% 신탁보수 : 0.07%	
	기타	0.0339%	-
	총보수·비용	1.6039%	2.47%
	합성 총보수·비용	1.6039%	2.4700%
※ 주식사항	· 보수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은 III.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중 '2. 전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기타비용은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합성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7시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8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등(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가. 이 투자신탁은 중국과 관련된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투자대상 국가: 중국, 홍콩,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환헤지 전략의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헤지 수단인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헷지 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상황, 투자신탁의 규모, 해당 통화 거래의 기초 여건 및 환헤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 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MSCI China(HKD)*90%+콜금리*10%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종훈	1972	팀장	57개	15,555억	2013년 04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 경력과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해외위탁운용역

펀드매니저	Kelvin Tang (2019. 5.13 기준)
과거 운용경력	- 2011 Samsung Asset Management(HongKong) Ltd

펀드매니저	Ronney Cheung (2019. 5.13 기준)
과거 운용경력	- 2011.08, Credit Suisse, Research Associate

4. 투자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최근 1년차 (18.05.03~ 19.05.02)	최근 2년차 (17.05.03~ 18.05.02)	최근 3년차 (16.05.03~ 17.05.02)	최근 4년차 (15.05.03~ 16.05.02)	최근 5년차 (14.05.03~ 15.05.02)
비교지수	-4.47 %	29.59 %	22.15 %	-27.63 %	42.65 %
A	-4.07 %	24.43 %	18.09 %	-29.87 %	45.36 %

주1) 비교지수 : MSCI China(HKD)*90%+콜금리*1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4.24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인 콜금리*10%+MSCI TR Gross China HK*9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국가위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투자대상 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투자대상 국가의 세법 변경 등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이 투자신탁은 중국과 관련된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투자대상 국가: 중국, 홍콩,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동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8.32%** 입니다.
- 주3)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른 목표 환헤지 비율과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기준일 현재 환노출 비율
80 ~ 110	79.28	20.72
	환율변화와 반대방향의 손익이 발생한 비율	환율변화와 동일한 방향 손익이 발생한 비율

- 주1)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한국거래소 통화선물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 변동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 주2) 목표한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사전에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가.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나. 과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

-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C2클래스→C3클래스→C4클래스→C5클래스로 자동 전환 됩니다. 참고로 C2클래스, C3클래스, C4클래스, C5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 주소)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	67946
A	91216
C1	91217
C2	99121
C3	99122
C4	99123
C5	9912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특이사항 없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	67946
A	91216
C1	91217
C2	99121
C3	99122
C4	99123
C5	9912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 4.23	최초 설정
2009. 2. 2	종류형투자신탁으로 변경 및 선취판매수수료 변경
2009. 5. 1	자본시장법에 따른 명칭 변경(삼성H파트너중국주식투자신탁 제1호→삼성H파트너중국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010. 5. 3	판매회사 보수 등 변경
2011. 1.17	채감식(CDSC)적용에 따른 판매보수 정정 및 모투자신탁의 해외업무위탁사 사명 변경
2012. 8.31	운용역변경(임창규 운용역→ 홍의석 운용역)
2013. 9.1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HSBC Global Asset Management(Hong Kong) Limited →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등
2014. 9.25	운용역변경(홍의석 운용역→ 이종훈 운용역)
2016. 8. 5	운용역 변경(이종훈 → 김성준)
2017. 4.2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추가, 펀드명 변경, BM 변경, LT 기준시간 변경, 운용보수 인하
2017.11. 2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2017.11.17	운용역 변경(김성준 운용역 → 이종훈 운용역)
2019. 5.13	해외위탁운용역 변경(Kenneth Lau → Kelvin Tang, Ronney Cheung)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 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대표전화 : 080-377-4777, 콜센터 : 080-377-4777)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위탁 운용사 및 업무 위탁 범위

해당 펀드	위탁운용사	업무위탁범위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운용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지시업무

(2) 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위탁운용사명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설립일	2007년 11월 01일
회사주소	Suite 4513-14, 45th Floor,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No.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2115 8722 팩 스 : 852-2115-8720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종훈	1972	팀장	57개	15,555억	1999년 02월 고려대 경제학 졸업 2006년 05월 Univ.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MBA 졸업 ※CFA:2009년 06월 ~ 현재 1999년 02월 ~ 2006년 06월 삼성화재 총무과 트 2006년 07월 ~ 2008년 05월 삼성자산운용 법 인영업팀 2008년 06월 ~ 2013년 03월 삼성자산운용 글 로벌마케팅팀 2013년 04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 용팀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이종훈	2014. 9.25 ~ 2016. 8. 4
김성준	2016. 8. 5 ~ 2017.11.16
이종훈	2017.11.17 ~ 현재

주1) 2019. 5.13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해외위탁운용역

펀드매니저	Kelvin Tang (2019. 5.13 기준)
과거 운용경력	- 2011 Samsung Asset Management(HongKong) Ltd - 2007 DBS Asset Management(HK) Limited - 2006 Manulife Asset Management(HK) Limited - 2002 DBS Asset Management(HK) Limited - 2000 Tai Fook Fund Management Limited - 1995 Impac Asset Management(HK) Limited

펀드매니저	Kelvin Tang (2019. 5.13 기준)
과거 운용경력	- 1994 The University of Lancaster MBA - 1990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FA

펀드매니저	Ronney Cheung (2019. 5.13 기준)
과거 운용경력	- 2011.08, Credit Suisse, Research Associate - 2012.02, Samsung Securities HK, Research Analyst - 2015.06, BNP Paribas HK, Research Analyst - 2015.07 삼성자산운용 홍콩법인 - 2004. Macquarie University Applied Finance/Commerce 학사

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삼성 GREAT CHINA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종훈	1972	팀장	58개	15,709억	1999년 02월 고려대 경제학 졸업 2006년 05월 Univ.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MBA 졸업 ※CFA:2009년 06월 ~ 현재 1999년 02월 ~ 2006년 06월 삼성화재 총무파 트 2006년 07월 ~ 2008년 05월 삼성자산운용 법 인영업팀 2008년 06월 ~ 2013년 03월 삼성자산운용 글 로벌마케팅팀 2013년 04월 ~ 現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 용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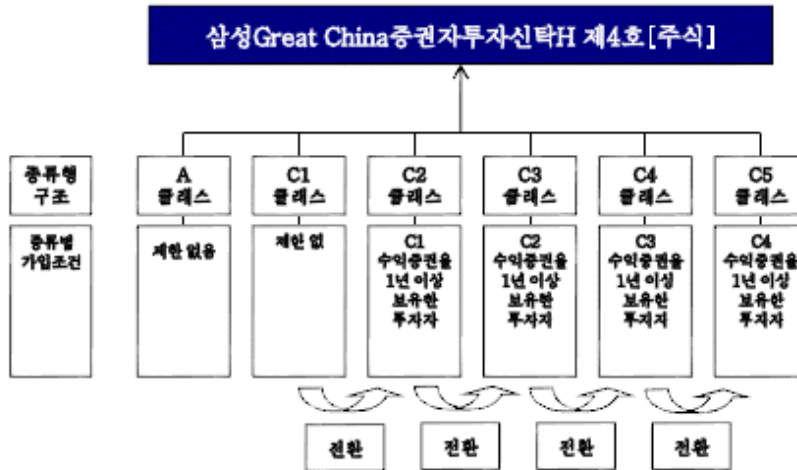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 기간
김성준	2016. 8. 5 ~ 2017.11.16
이종훈	2017.11.17 ~ 2017.12.13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 1)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 시마다 C2클래스 → C3클래스 → C4클래스 → C5클래스로 자동 전환됩니다.(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 2) C2, C3, C4, C5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3)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①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② 수익증권을 전환 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C1클래스 가입자의 경우 전환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환한 이후의 보유 클래스에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전환한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도록 일괄하여 판매보수율을 인하하는 변경(2011.01.17 시행)으로 인해 클래스가 전환된 경우에는 상기의 전환기준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A	2007. 4. 23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1	2009. 7. 3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2	2011. 1. 16	C1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3	2011. 7. 4	C2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4	2012. 7. 3	C3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C5	미설정	C4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2)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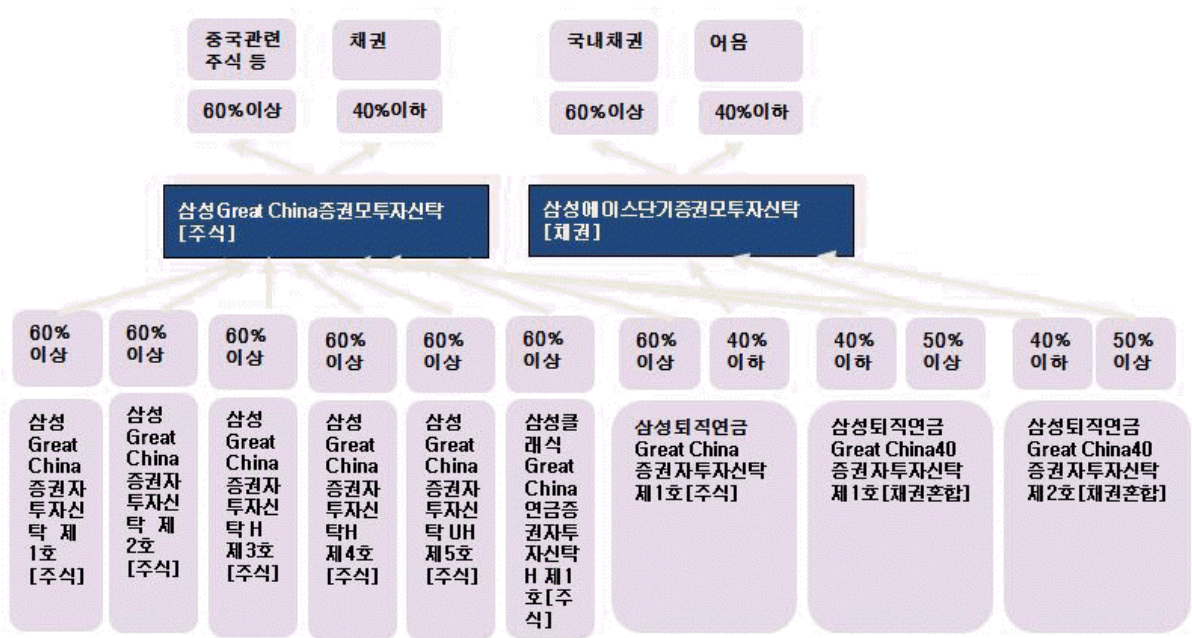
클래스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A	납입금액 1억미만 : 1.2% 이내, 1억이상~5억미만 : 1.0% 이내, 5억이상~50억미만 : 0.5% 이내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0.90	0.60	0.07	-
C1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0.90	1.50	0.07	-
C2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0.90	1.40	0.07	-
C3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0.90	1.30	0.07	-
C4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0.90	1.20	0.07	-
C5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0.90	1.10	0.07	-

주1) 선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투자신탁 보수에 대한 추가 정보(판매회사 보수의 기간별 차등 적용 등)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해외 주식 : 60% 이상 채권 : 40% 이하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어음 : 40% 이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중국 등과 관련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과 중국관련 주식에 분산투자하여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 다양한 지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에 고르게 분산 투자할 계획입니다. 2) 삼성자산운용은 국내자산 및 유동성 등의 운용을 담당하며,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는 중국 관련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운용을 담당합니다. -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의 풍부한 중국 투자 경험을 활용하여 철저한 종목 리서치를 통해 저평가 종목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3) 중국시장에 집중 투자하나, 중국과 관련된 국가 및 여러 증권 시장에 상장된 “중국과 관련된 주식 등”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집중 투자로 나타날 수 있는 비체계적위험을 제한적으로 통제하는 국제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합니다. - 비교 지수 : MSCI China(KRW) X 100%

	등록신청서 제출일	2019. 5. 8
--	-----------	------------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등(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	60%이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중국기업을 포함한 중화권의 중국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2)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한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3)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 한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4)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5)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원활한 환매지를 위한 모투자신탁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해외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발행한 것. 다만, 증권예탁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함.
2)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3)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4)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5)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 주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장외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아래의 투자제한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에 대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2)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3)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이 투자신탁은 중국등(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과 관련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투자대상 국가: 중국, 홍콩,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 (2)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환헷지 전략의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헷지 수단인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헷지 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상황, 투자신탁의 규모, 해당 통화 거래의 기초 여건 및 환헷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1) 비교지수 : MSCI China(HKD)*90%+콜금리*10%
 - 2) MSCI China 지수 소개 및 선정 사유 : 미국 투자은행이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지수로 중국, 홍콩, 미국 등의 지역에 상장된 중국 대표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4)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이종 통화간 교차 헷지, 기타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를 활용한 헷지를 포함)등을 통해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헷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5) 환헷지란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원화 대 외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주식, 채권 또는 어음 등의 외화표시 자산등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중에 환율의 하락(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을 제어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의 하락)하는 경우 투자한 외화표시 자산 등의 가치는 상승하지만 환헤지를 위한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6)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른 목표 환헤지 비율과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기준일 현재 환노출 비율
80 ~ 110	79.28	20.72
	환율변화와 반대방향의 손익이 발생한 비율	환율변화와 동일한 방향 손익이 발생한 비율

주1)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한국거래소 통화선물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 변동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표시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주2) 목표한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사전에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 (7)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 전략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u>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과 중국관련 주식에 분산투자하여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u> - <u>중국, 홍콩,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 다양한 지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에 고르게 분산 투자할 계획입니다.</u> 2) 삼성자산운용은 국내자산 및 유동성 등의 운용을 담당하며,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는 중국 관련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운용을 담당합니다. -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의 풍부한 중국 투자 경험을 활용하여 철저한 종목 리서치를 통해 저평가 종목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3) 중국시장에 집중 투자하나, 중국과 관련된 국가 및 여러 증권 시장에 상장된 “중국과 관련된 주식 등”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집중 투자로 나타날 수 있는 비체계적위험을 제한적으로 통제하는 국제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합니다. - 비교 지수 : MSCI China(KRW) X 100%
--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구분	대상 국가	내용설명
이머징아시아	CHINA	○ 개요 17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과거 30년간 자본주의와 유사한 형태의 계획경제체제로 변모. 16년 기준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및 13년 기준 세계 1위의 수출국 - 인구: 13.7억 명(인구증가율: 0.41%, 평균기대수명: 75.7년) ○ 시장현황 -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13~17년 연평균 약 7%대의 성장을 이룸. 국내 저축률, 내수소비 부진, 고임금 일자리 부족 등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위협하는 요인 - '16년 정부투자, 수출, 중공업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혁신, 내수를 향상시킬 5개년 계획추진 - 1인당 GDP(PPP): USD 17,000('17년) ○ 거래제도 - 사용 통화: Chinese renminbi(CNY) - 거래소: Shanghai Stock Exchange, Shenzhen Stock Exchange - 예탁기관: China Securities Depository & Clearing Corporation Limited(CSDCC) (상해와 심천으로 분리되어 있음) - 결제제도: A-SHARE(당일결제), B-SHARE(T+3일) - 입금 및 송금 제한: 월 1회 - 외국인 투자제한: A-SHARE의 경우 개별 주식의 10% 이상 보유 제한
	HONG KONG	○ 개요 17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1841년 이래 영국 지배령이었으나 1997년 1월 1일 이후 중국 지배하의 경제 자치권 보유(향후 50년간) - 인구: 719만명(인구증가율: 0.32%, 평균기대수명: 83년) ○ 시장현황 - GDP 4배 규모의 물동량을 보유한 국제 교역 중심지. '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후 '13~14년 3%수준 성장, '15~16년 2%수준 성장, 17년 3.8% 성장 - 경쟁력: 지정학적 위치, 중국의 성장에 따른 반사 이익 - 전 인구의 63%가 도소매업 및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 12.5%가 금융업, 17.1%가 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서비스 강국 - 1인당 GDP(PPP): USD 61,000('17년)

		○ 거래제도 - 사용 통화: HKD(홍콩달러) - 대표거래소: Stock Exchange of Hong Kong(SEHK), Hong Kong Futures Exchange(HKFE) - 예탁기관: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HKSCC)에서 운영하는 Central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CCASS)와 홍콩의 중앙은행인 Hong Kong Monetary Authority(HKMA)가 운영하는 회사채와 국채 예탁기관인 Central Moneymarkets Unit(CMU) - 결제제도: 일반적으로 T+2, 비상장주식과 기타 유가증권은 당일결제와 T+2일 결제가 가능함. 그러나 CCASS의 경우 브로커간 결제에 1일을 추가로 필요하도록 규정하여 실제로는 T+3일 - 외국인 투자제한: 방송관련 개별종목을 10%, 해당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 비중이 49% 이상인 경우에는 2% 추가 매입시 마다 사전에 승인 필요
--	--	--

주) 상기의 국가 개요는 이 투자신탁재산(모투자신탁 포함)으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에 열거된 국가라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개요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일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국가개요의 내용이 실제 정보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작성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 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이종 통화간 교차 헷지, 기타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를 활용한 헷지를 포함)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 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 헷지 비율을 조정하여 최대한 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헷지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하여 100% 헷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신탁 순자산액±일정 범위에서 환헷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환헷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순자산액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부분은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 시스템의 후진성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 불능 및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상하한폭 변경 등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투자대상 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투자대상 국가의 세법 변경 등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국가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특정 국가(중국)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중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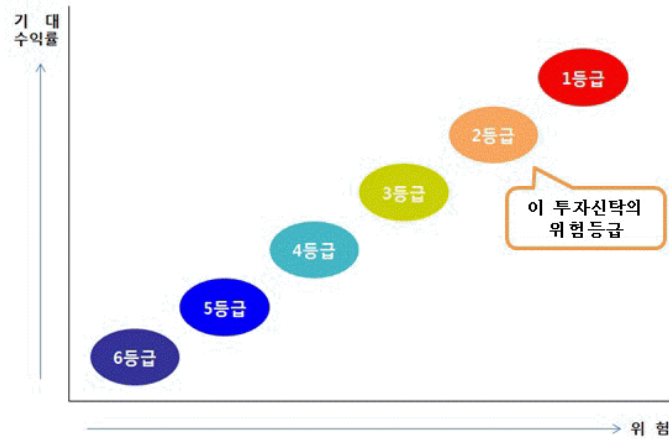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중국과 관련된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투자대상 국가: 중국, 홍콩,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구분]

- 1등급 : 매우높은위험
- 2등급 : 높은위험
- 3등급 : 다소높은위험
- 4등급 : 보통위험
- 5등급 : 낮은위험
- 6등급 : 매우낮은위험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8.32%** 입니다.
- 주3)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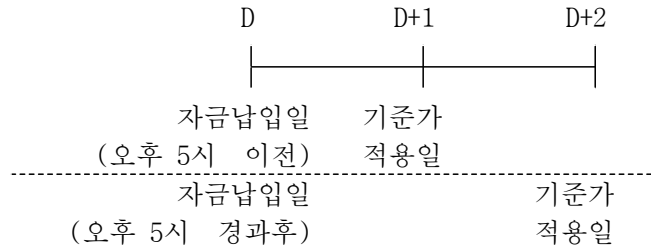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클래스 :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C1클래스 :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C2클래스 : C1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C3클래스 : C2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C4클래스 : C3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 C5클래스 : C4클래스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4) 기준가 적용일에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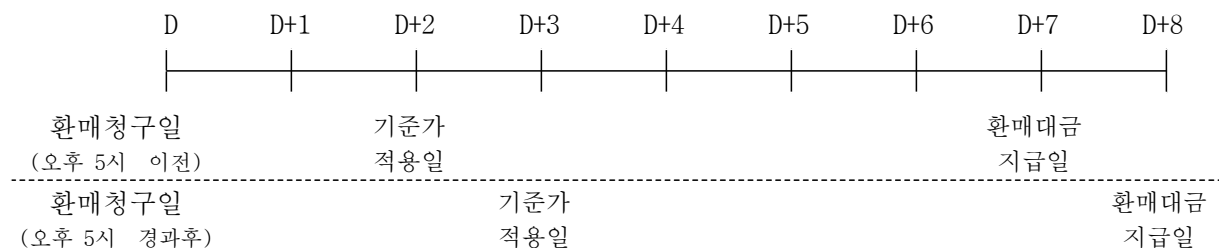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환매수수료	비고(지급시기)
A클래스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환매시
C1클래스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환매시
C2클래스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환매시
C3클래스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환매시
C4클래스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환매시
C5클래스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환매시

주) 단 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보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청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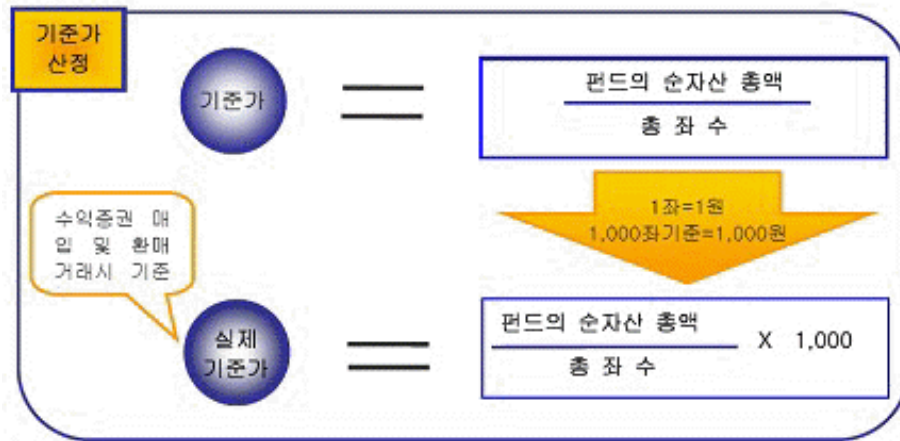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 1억미만 : 1.2% 이내, 1억이상~5억미만 : 1.0% 이내, 5 억이상~50억미만 : 0.5% 이내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
C1	제한없음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
C2	C1클래스 가입자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
C3	C2클래스 가입자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
C4	C3클래스 가입자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
C5	C4클래스 가입자	-	-	90일미만 이익금의 : 70%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구됩니다.

주2) 선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1)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의 관련보수등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0.90	0.60	0.07	-	0.0339	1.6039	1.6039	0.0892
C1	0.90	1.50	0.07	-	실비	2.47	2.47	실비
C2	0.90	1.40	0.07	-	실비	2.37	2.37	실비
C3	0.90	1.30	0.07	-	실비	2.27	2.27	실비
C4	0.90	1.20	0.07	-	실비	2.17	2.17	실비
C5	0.90	1.10	0.07	-	실비	2.07	2.07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최초설정 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	----------------------------	----------------------------	---	-----------	---	---	-----------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에는 이 투자신탁이 해당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클래스	158,465	499,562	875,621	1,993,160
		선취 판매수수료 : 1,000만원 X 1.2% = 120,000원			
	C1클래스 가입 자로 자동 전환 시	247,000	746,118	1,248,932	2,708,750

-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정율식으로 인하되는 판매회사 보수분은 미반영)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종류별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C1클래스를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 C2클래스→C3클래스→C4클래스→C5클래스로 자동 전환 되므로 이상의 예시에서는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C2클래스, C3클래스, C4클래스, C5클래스의 경우에는 최초가입이 불가능한 전환형 클래스로 투자자는 C1클래스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차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가 자동이월되면서, 환매 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지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 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이 300억미만으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목	12기 (2019. 4.22)	11기 (2018. 4.22)	10기 (2017. 4.22)
자산총계	15,630	17,734	20,986
운용자산	15,630	17,734	17,912
증권	15,383	16,694	16,725
파생상품	-170	183	414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17	857	772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0	1	3,074
부채총계	0	0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0	0	0
자본총계	16,108	23,034	29,356
원본	15,173	16,589	24,964
수익조정금	1,365	1,241	1,306
이익잉여금	-430	5,204	3,087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12기 (2018. 4.23~2019. 4.22)	11기 (2017. 4.23~2018. 4.22)	10기 (2016. 4.23~2017. 4.22)
운용수익	-429	5,191	3,078
이자수익	7	7	8
배당수익	307	363	0
매매/평가차익(손)	-743	4,821	3,070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	2	2

항목	12기 (2018. 4.23~2019. 4.22)	11기 (2017. 4.23~2018. 4.22)	10기 (2016. 4.23~2017. 4.22)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	2	1
당기순이익	-430	5,189	3,077
매매회전율	-	-	-

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항목	12기 (2019. 4.22)	11기 (2018. 4.22)	10기 (2017. 4.22)
자산총계	15,630	17,734	20,986
운용자산	15,630	17,734	17,912
유가증권	15,383	16,694	16,725
지분증권	0	0	0
채무증권	0	0	0
수익증권	15,383	16,694	16,725
파생상품	-170	183	414
현금및 예치금	417	857	772
현금및현금성자산	417	826	742
증거금	0	31	30
대출채권	0	0	0
콜론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0	1	3,074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0	0	3,073
기타미수입금	0	0	1
미수이자	0	1	0
미수배당금	0	0	0
선급비용	0	0	0
부채총계	0	0	0
운용부채	0	0	0
선수이자	0	0	0
기타부채	0	0	0

항목	12기 (2019. 4.22)	11기 (2018. 4.22)	10기 (2017. 4.22)
기타미지급금	0	0	0
미지급보수	0	0	0
기타미지급비용	0	0	0
미지급분배금	0	0	0
자본총계	16,109	23,034	29,356
원본	15,173	16,589	24,964
이익잉여금	936	6,445	4,393
수익조정금	1,365	1,241	1,306
이월이익잉여금	1	15	10
기지급이익분배금	0	0	0
당기순이익	-430	5,189	3,077
부채및 자본총계	16,108	23,034	29,356
총좌수	15,173	16,589	24,964
기준가격	1,030	1,069	841

다.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12기 (2018. 4.23~2019. 4.22)	11기 (2017. 4.23~2018. 4.22)	10기 (2016. 4.23~2017. 4.22)
운용수익(손실)	-429	5,191	3,078
투자수익	314	370	8
이자수익	7	7	8
배당수익	307	363	0
기타수익	0	0	0
매매차익	647	3,089	2,099
파생상품매매이익	419	1,910	2,099
수익증권매매이익	228	1,180	0
외환거래매매이익	0	0	0
매매차손	-1,201	-2,484	-2,605
파생상품매매손실	-1,201	-700	-1,563
수익증권매매손실	0	-1,785	-1,042
외환거래매매손실	0	0	0
평가손익	-189	4,217	3,576

항목	12기 (2018. 4.23~2019. 4.22)	11기 (2017. 4.23~2018. 4.22)	10기 (2016. 4.23~2017. 4.22)
파생상품평가손익	-353	-231	-446
수익증권평가손익	164	4,448	4,022
외환거래평가손익	0	0	0
운용비용	1	2	2
운용수수료	0	0	0
수탁수수료	0	0	0
판매수수료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	2	1
당기순이익	-430	5,189	3,077
좌당순이익	-0.03	0.31	0.1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구분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A클래스	2018.4.23 ~2019.4.22	174	174	0	0	15	15	159	159
	2018.4.23 ~2018.10.22	174	174	0	0	7	7	166	166
	2017.4.23 ~2018.4.22	257	257	0	0	84	84	174	174
	2016.4.23 ~2017.4.22	290	290	0	0	33	33	257	257
	2015.4.23 ~2016.4.22	342	342	0	0	52	52	290	290
C1클래스	2018.4.23 ~2019.4.22	0	0	0	0	0	0	0	0
	2018.4.23 ~2018.10.22	0	0	0	0	0	0	0	0
	2017.4.23 ~2018.4.22	0	0	0	0	0	0	0	0
	2016.4.23 ~2017.4.22	0	0	0	0	0	0	0	0
	2015.4.23 ~2016.4.22	0	0	0	0	0	0	0	0
C2클래스	2018.4.23 ~2019.4.22	0	0	0	0	0	0	0	0
	2018.4.23 ~2018.10.22	0	0	0	0	0	0	0	0

	2017.4.23 ~2018.4.22	0	0	0	0	0	0	0	0
	2016.4.23 ~2017.4.22	0	0	0	0	0	0	0	0
	2015.4.23 ~2016.4.22	0	0	0	0	0	0	0	0
C3클래스	2018.4.23 ~2019.4.22	0	0	0	0	0	0	0	0
	2018.4.23 ~2018.10.22	0	0	0	0	0	0	0	0
	2017.4.23 ~2018.4.22	0	0	0	0	0	0	0	0
	2016.4.23 ~2017.4.22	0	0	0	0	0	0	0	0
	2015.4.23 ~2016.4.22	0	0	0	0	0	0	0	0
C4클래스	2018.4.23 ~2019.4.22	0	0	0	0	0	0	0	0
	2018.4.23 ~2018.10.22	0	0	0	0	0	0	0	0
	2017.4.23 ~2018.4.22	0	0	0	0	0	0	0	0
	2016.4.23 ~2017.4.22	0	0	0	0	0	0	0	0
	2015.4.23 ~2016.4.22	0	0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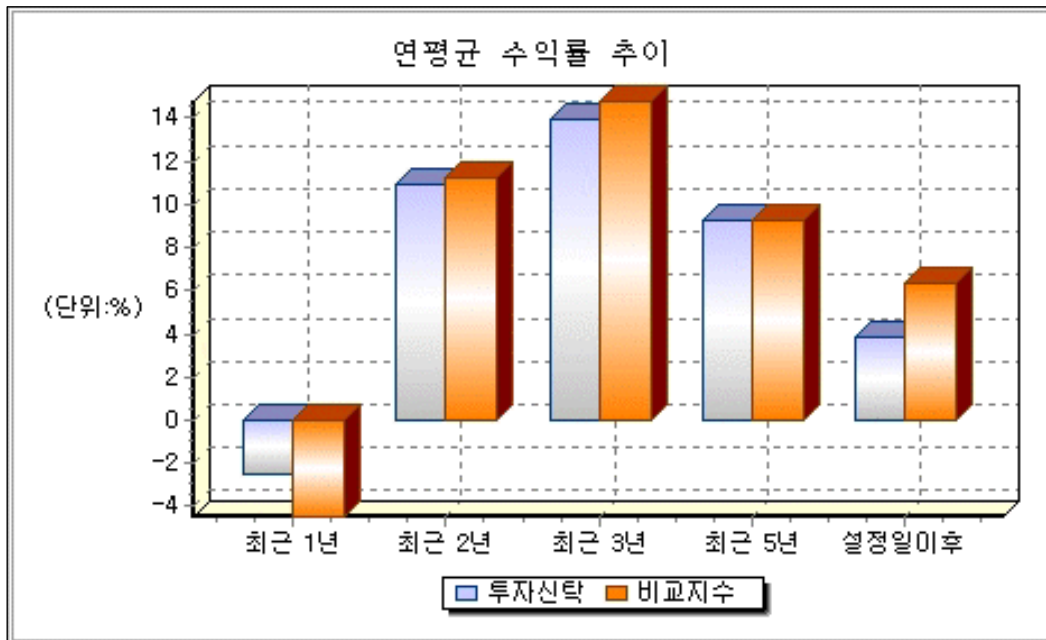
(1)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

연도	최근 1년 (18.05.03 ~19.05.02)	최근 2년 (17.05.03 ~19.05.02)	최근 3년 (16.05.03 ~19.05.02)	최근 5년 (14.05.03 ~19.05.02)	설정일 이후 (07.04.23 ~19.05.02)
투자신탁	-2.53 %	10.96 %	13.91 %	9.28 %	3.84 %
비교지수	-4.47 %	11.26 %	14.78 %	9.31 %	6.31 %

주1) 비교지수 : MSCI China(HKD)*90%+콜금리*1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4.24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인 콜금리*10%+MSCI TR Gross China HK*9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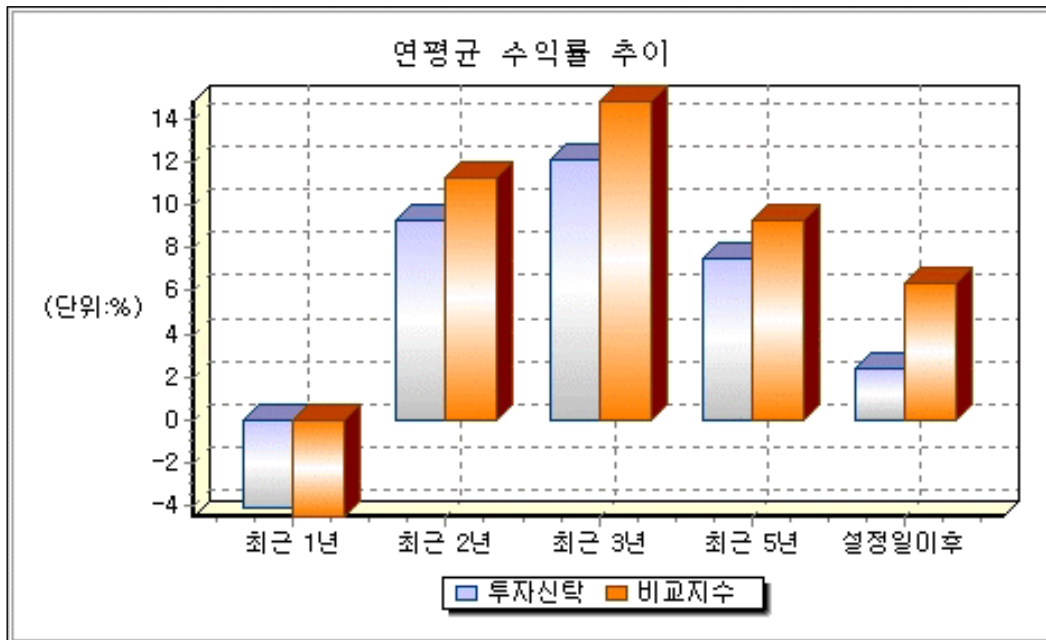
(2)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A)

연도	최근 1년 (18.05.03 ~19.05.02)	최근 2년 (17.05.03 ~19.05.02)	최근 3년 (16.05.03 ~19.05.02)	최근 5년 (14.05.03 ~19.05.02)	설정일 이후 (07.04.23 ~19.05.02)
투자신탁	-4.07 %	9.25 %	12.12 %	7.52 %	2.39 %
비교지수	-4.47 %	11.28 %	14.79 %	9.32 %	6.31 %

주1) 비교지수 : MSCI China(HKD)*90%+콜금리*1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4.24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인 콜금리*10%+MSCI TR Gross China HK*9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1)

- 해당사항 없음

(4)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2)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3)

- 해당사항 없음

(6)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4)

- 해당사항 없음

(7)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5)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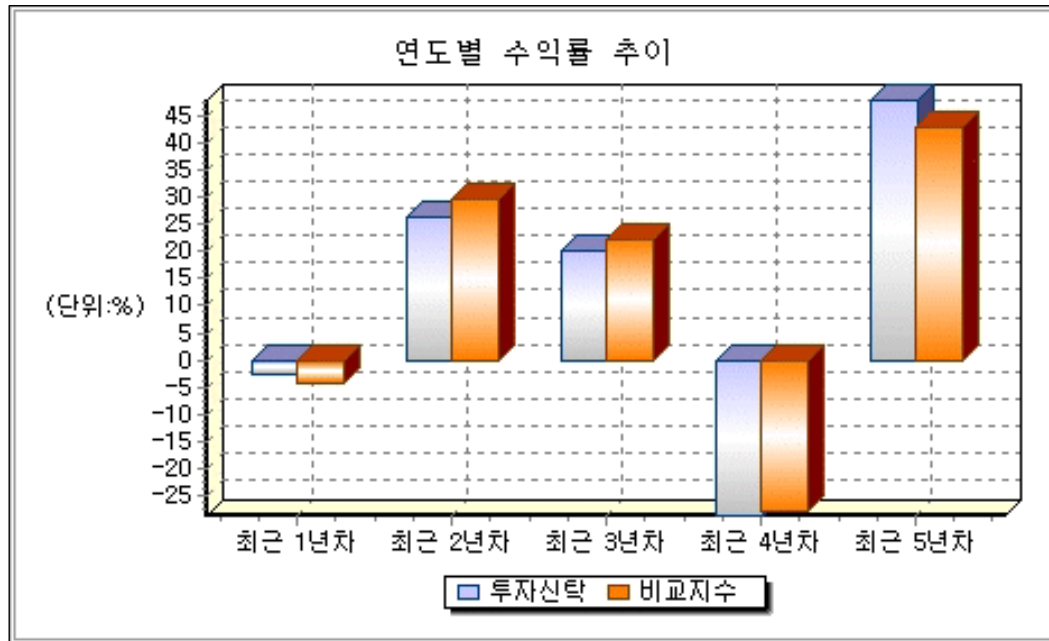
(1)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

연도	최근 1년차 (18.05.03 ~19.05.02)	최근 2년차 (17.05.03 ~18.05.02)	최근 3년차 (16.05.03 ~17.05.02)	최근 4년차 (15.05.03 ~16.05.02)	최근 5년차 (14.05.03 ~15.05.02)
투자신탁	-2.53 %	26.32 %	20.06 %	-28.62 %	47.71 %
비교지수	-4.47 %	29.59 %	22.15 %	-27.63 %	42.65 %

주1) 비교지수 : MSCI China(HKD)*90%+콜금리*1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4.24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인 콜금리*10%+MSCI TR Gross China HK*9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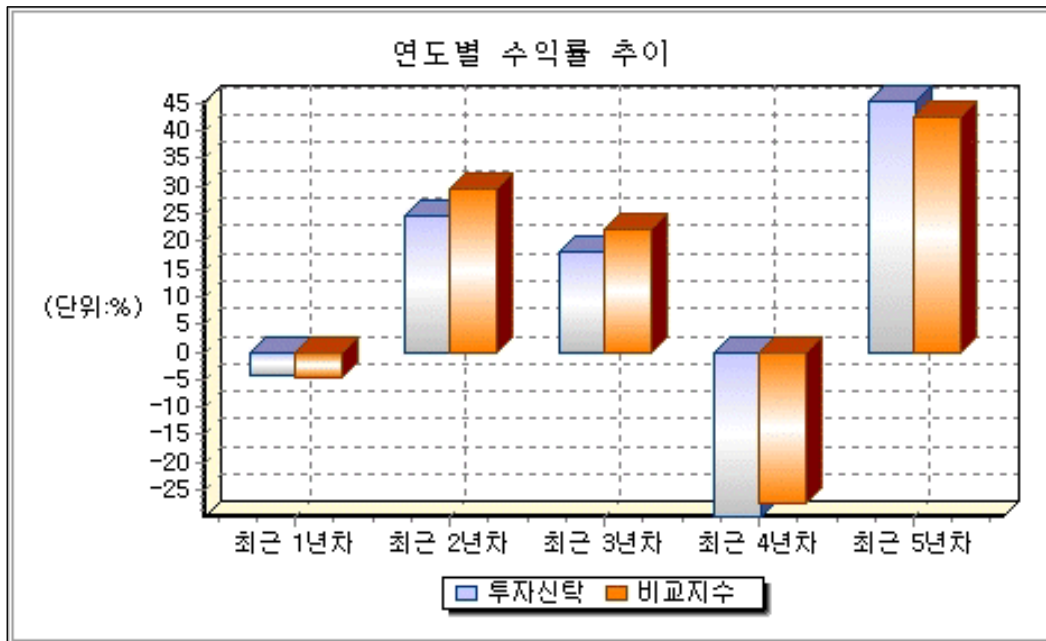
(2)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A)

연도	최근 1년차 (18.05.03 ~19.05.02)	최근 2년차 (17.05.03 ~18.05.02)	최근 3년차 (16.05.03 ~17.05.02)	최근 4년차 (15.05.03 ~16.05.02)	최근 5년차 (14.05.03 ~15.05.02)
투자신탁	-4.07 %	24.43 %	18.09 %	-29.87 %	45.36 %
비교지수	-4.47 %	29.62 %	22.14 %	-27.63 %	42.65 %

주1) 비교지수 : MSCI China(HKD)*90%+콜금리*1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4.24 일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변경 전 비교지수인 콜금리*10%+MSCI TR Gross China HK*9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1)

- 해당사항 없음

(4)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2)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3)

- 해당사항 없음

(6)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4)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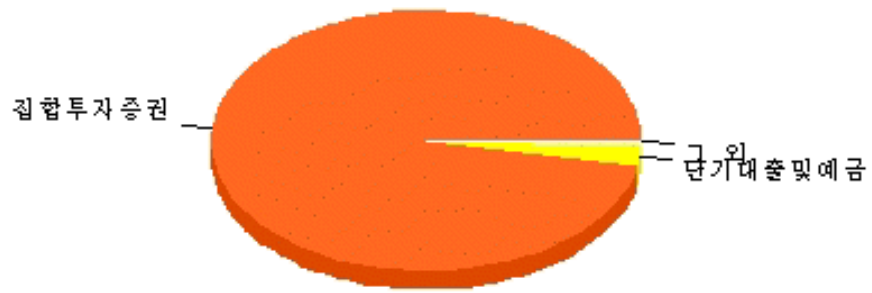
(7) 삼성Great China증권자투자신탁H 제4호[주식](C5)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9.03.31 기준,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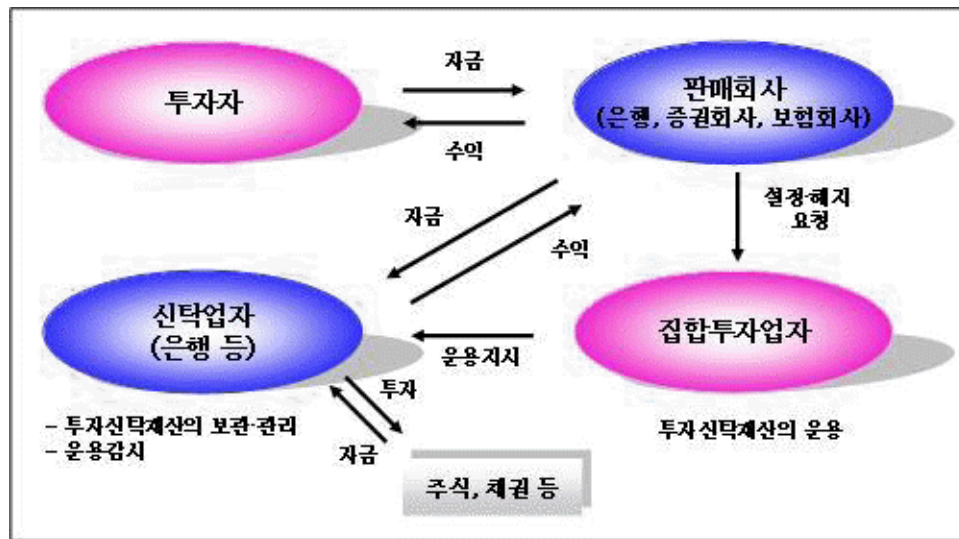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148	0	0	-1	0	0	0	4	1	152
합계	0	0	0	148	0	0	-1	0	0	0	4	1	152



■ 집합투자증권	96.76 %	■ 단기대출및예금	2.72 %
그 외	0.52 %		

※ 값이 음수인 경우는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연락처 : 080-377-4777, http://www.samsungfund.com)
회사 연혁	1998.09 삼성생명투자신운용설립 (납입자본금 300억원) 1999.12 舊 삼성투자신운용 흡수 합병(납입자본금 632억) 2000.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2000.03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1.01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2001.04 수탁고 20조 달성 2001.11 연기금 투자폴 주간 운용사 선정 2002.01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2003.01 관리자산 50조원 2004.12 관리자산 60조원 2005.04 ABF 펀드 설정(아시아채권펀드의 한국내 운용사로 선정) 2005.11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 재선정 2008.03 관리자산 74조원 2008.04 홍콩 현지법인 영업인가 2008.12 대한민국 증권대상 수상(서울경제신문 주최) 2010.04 삼성투자신탁운용에서 삼성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회사 연혁	2011.05	Asian Investor지 선정, 한국 최우수 운용사
	2013.10	연기금 투자폴 주간운용사 재선정
	2013.12	관리자산 127.4조원 달성
	2015.02	삼성생명 뉴욕법인 인수
	2015.04	인도 릴라이언스캐피탈과 전략적 제휴 체결
	2015.07	노동부 산재기금 투자폴 주간운용사 선정
	2015.10	미국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2015.11	중국ETF시장 진출을 위한 건신기금과의 전략적 제휴 체결
	2015.11	삼성생명 런던법인 인수
	2015.12	관리자산 200조 달성
	2016.04	미국 캐피탈그룹과 삼성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2016.04	유럽 로스차일드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2016.08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
	2017.01	물적분할을 통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삼성헤지자산운용(주) 설립
	2017.05.30	한국형 Retirement Incom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7.09.08	연기금 투자폴 주간운용사 재선정
자본금	934.3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생명보험(주)(100%)	

주) 산정 기준일은 2018.1.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연 결 재 부 상 태 표

제 21(당)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20(전)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식	당기말	전기말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6	45,925,007,810	50,927,731,124
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30	-	214,693,713,847
II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7,30	502,272,676,668	-
IV. 매도가능금융자산	5,30	-	85,357,384,836
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8,30	7,064,156,194	-
VI. 만기보유금융자산	5	-	35,028,543,280
VII. 상각후원가금융자산	5, 9	255,975,096,514	165,331,157,228
VIII. 유형자산	10	2,876,142,870	4,073,203,396
IX. 무형자산	11	13,290,067,828	13,860,345,249
X. 당기법인세자산		-	557,969,530
XI. 이연법인세자산		3,621,325,020	2,269,324,842
XII. 기타자산	12	2,583,218,211	2,582,223,043
자 산 총 계		833,607,691,115	574,681,596,365
부 채			
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5,13,30	-	5,349,265,494
II. 예수부채	5,14	107,816,598,397	64,681,628,058
III. 기타금융부채	5,15	274,635,800,847	117,026,912,359
IV. 총당부채	16	308,696,735	299,912,777
V. 순확정급여부채	17	887,566,722	73,037,332
VI. 당기법인세부채		15,491,899,616	13,175,452,724
VII. 기타부채	18	1,452,828,004	1,422,176,014
부 채 총 계		400,593,390,321	202,028,384,758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433,014,300,794	372,653,211,607
I. 자본금	20	93,430,000,000	93,430,000,000
II. 기타불입자본	20	(384,524,208)	(384,524,208)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20	(10,056,614,305)	(10,732,766,442)
IV. 이익잉여금	21	350,025,439,307	290,340,502,257
비지배자본		-	-
자 본 총 계		433,014,300,794	372,653,211,60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33,607,691,115	574,681,596,36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21(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20(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당기	전기
I. 영업수익		244,102,748,707	198,662,576,487
1. 수수료수익	22.28	199,574,838,246	177,361,575,394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22.26	26,924,556,080	16,450,387,819
3. 이자수익	22.26	8,871,141,609	3,312,580,313
4. 외환거래이익	22	5,442,535,134	309,328,219
5. 배당금수익	22.26	3,235,650,784	1,216,599,803
6. 기타수익	22	54,026,854	12,104,939
II. 영업비용		163,883,019,649	130,224,684,984
1. 수수료비용	23.28	9,886,222,171	10,132,988,981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23.26	36,175,063,709	14,062,702,595
3. 이자비용	23.26	1,807,096,720	613,585,221
4. 외환거래손실	23	2,607,254,035	472,612,507
5. 판매비	24	9,111,723,781	6,678,730,127
6. 일반관리비	24.28	104,289,993,861	98,269,597,426
7. 기타비용	23.28	5,665,372	4,468,127
III. 영업이익		80,219,729,058	68,437,891,503
IV. 영업외손익		(940,219,183)	(729,235,633)
1. 영업외수익	25	52,510,168	44,323,711
2. 영업외비용	25	992,729,349	773,559,344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9,279,509,875	67,708,655,870
VI. 법인세비용	27	19,800,631,376	19,708,666,859
VII. 당기순이익		59,478,878,499	47,999,989,011
VIII. 기타포괄손익		1,270,957,312	(5,737,303,94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99,892,439)	(367,340,181)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454,816,700	-
2. 확정급여부채 재조정요소		(981,737,347)	(482,806,876)
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27	127,028,208	115,466,69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670,849,751	(5,389,963,788)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390,672,697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30,853,082)	-
3. 해외사업환산손익		1,691,712,605	(5,780,310,425)
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9,990,228	(326,040)
IX. 당기총포괄이익		60,749,835,811	42,262,685,062
X. 당기순이익의 귀속		59,478,878,499	47,999,989,011
1. 지배기업의 소유주		59,478,878,499	47,999,989,011
2. 비지배지분		-	-
X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60,749,835,811	42,262,685,062
1. 지배기업의 소유주		60,749,835,811	42,262,685,062
2. 비지배지분		-	-
XII. 지배기업 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29	3,183	2,56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라. 운용자산 규모

(2019. 5. 2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56,190	12,871	82,190	123,412	281,810	92,166	28,911	309	115	777,97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위탁회사의 주요 업무]

해당 펀드	위탁운용사	업무위탁범위
삼성GREAT CHINA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운용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운용지시업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삼성자산운용(홍콩)유한공사
설립일	2007년 11월 01일
회사주소	Suite 4513-14, 45th Floor,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No.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 : 852-2115 8722 팩 스 : 852-2115-8720

- (2) 위탁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위탁집합투자업자 보수의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및 위탁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 (3) 업무위탁계약기간은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위탁집합투자업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전화번호 : 1588-177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4층 TEL: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 보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층 TEL: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계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 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한함)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 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 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 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 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